

전자채권 양도계약서 (포괄계약)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1조 ~ 제2조 <생략></p> <p>제3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전자채권발행인인 구매기업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앞 채권양도통지는 다음절차에 의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판매기업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정 전자채권을 지정하여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채권 양도통지를 요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<생략></p> <p>제4조 ~ 제7조 <생략></p>	<p>제1조 ~ 제2조 <좌동></p> <p>제3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</p> <p>① <좌동></p> <p>② 전자채권발행인인 구매기업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앞 채권양도통지는 다음절차에 의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판매기업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정 전자채권을 지정하여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채권 양도통지를 요청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<좌동></p> <p>제4조 ~ 제7조 <좌동></p>	<p>-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</p>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2월 21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